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제61조의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장부상 손금계상함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할 수 있고 또한 회계감사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세무상으로만 손금반영해도 가능. 또한 이익처분상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면 손금산입 계상한 것으로 봄.
- 손금산입하는 방법(①과 ② 선택인데 ②가 유리)
 - ① 결산조정방법으로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총당금 설정(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총당금 설정) 방법으로 손금산입방법(재무제표상 해당 자산 계정과목에서 총당금 금액이 차감(-)표시되어 순액으로 나타나므로 재무구조개선 안됨)
 - ② 신고조정방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하는 방법(자기자본 증액되고 재무구조개선, 재무비율 계산상 유리)
- 각 자산별로 일시상각총당금 또는 압축기장총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는 그 준비금적립금 계정금액을 처분하여야 함(법정 잉여금계정에서 배당가능 일반잉여금으로 계정과목 변경됨).

●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1. 본 조의 개요

법인세법상의 각종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법인이 스스로 장부상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은 조세지원혜택방법인바, 일정기간동안 대응손금산입을 통하여 과세를 유예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당기지출이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은 결산조정 등의 방법으로 법인이 스스로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조건으로 손금산입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해 본 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의 준비금은 법인의 임의선택에 따라 결산조정방법으로 장부상 손금에 계상할 수도 있지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외감법상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비용반영 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에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산입이 적용된다.

2.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선택

①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손금산입 및 잉여금처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법인세법상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회계상(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비용으로 반영하면 기업회계상 기간손익이 왜곡되며 재무제표의 표시가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적정공시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항을 세무상 무난히 반영하기 위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준비금의 손금산입액만큼은 당기의 이익처분방법으로 적립금계정으로 적립하

여야 한다.

- ② 손금산입준비금의 익금환입시 적립금 처분 등 절차
 - ◎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 세무조정계산서 반영 → 이익잉여금처분에서 적립금 적립
 - ◎ 손금반영된 준비금의 익금환입 :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환입 → 이월잉여금에서 적립금처분
 - ◎ 적립금의 임의 먼저 처분 → 익금반영전 임의계정 변경하면 당초 손금계상을 부인함.
-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일시상각총당금·압축기장총당금 등의 세무조정만으로 계상

법인이 본 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지원혜택 내용에 대해 일시상각총당금(일시상각비)나 압축기장총당금 전입방법으로 손금계상하는 것에 대해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총당금 또는 압축기장총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총당금 또는 압축기장총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④ 관련 명세서의 제출

세무조정만으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면, 일시상각충당금(상각자산), 압축기장충당금(비상각자산) 및 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II. 준비금 손금산입방법 선택 사례와 외계·세무처리방법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

① 손금산입의 비용계상, 준비금의 부채계상방법

결산재무제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은 세무상 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해도 별 제약이 없으므로 반영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타당한 회계처리는 아님.

① 준비금 3천만원 전입, 비용손실반영, 손금산입되므로 세무조정 불필요

(차) 투자준비금 전입 3천만원 (대) 투자준비금(부채계정) 3천만원
(당기비용·영업외비용)

손익계산서상으로도 비용반영되었고 세무상 자동적으로 손금계상된 것임. 투자준비금은 부채계정에 반영함.

② 준비금 3년후 분할(3분의 1) 환입시킬 때 이익 계상하면서 익금환입됨.

(차) 투자준비금 1천만원 (대) 투자준비금환입 1천만원
환입액이 수익·이익반영되었고 세무상 자동적으로 익금계산된 것임.

③ 준비금의 조기환입, 임의처분인 경우 : 당초의 손금산입액을 부인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함.

② 손금산입액의 세무조정계상, 준비금의 잉여분 처분 계상방법

결산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려는 회사 혹은 회계사 외부 감사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특법상 준비금 등을 결산재무제표상 비용반영하지

(회계결산 반영방법)

- (차) ① 토 지 3억원 (대) ② 재평가적립금 3억원
 (차) ③ 압축기장충당금전입 3억원 (대) ④ 압축기장충당금 3억원

- 세무상 토지재평가차익(적립금) 3억원이 익금산입(기타)되면서 압축기장충당금전입액 3억원이 당기비용·손실로 대응하여, 자동으로 손금산입(⊖유보)되어 법인세추가납부 효과는 없음. 손금산입 ⊖유보된 충당금 전입비용은 향후 당해 토지매각할 때 환입되면서 ⊕유보로 최종처분시 일시익금산입됨.
- 회계결산에서 ①토지증가액 3억원에 대응하여 ④충당금부채증가액 3억원이 직접 차감되므로 자산의 순증가액이 반영되지 않고, ②재평가적립금계정의 잉여금 3억원의 증가에 대응하여 ③압축기장충당금 전입액의 비용 3억원이 대응되므로 자기자본(잉여금)의 순증가액이 반영되지 않음.

(회계결산 반영하지 않는 방법)

- (차) 건 물 5억원 (대) 합병차익(부의영업권) 5억원

- 합병차익 5억원은 부동산평가차익이므로 익금산입되면서 기타로 처분함.
- 동액은 회계결산상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상각충당금 전입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 ⊖유보처리함. 향후 건물 감가상각시 매연도 감가상각비 총액중에서 해당액을 감액시키면서 당초 ⊖유보된 금액을 ⊕유보환입방법으로 당기 감가상각비와 서서히 상쇄하여 나감.

② 재무구조개선효과를 위한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반영

상기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는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상의 모든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잉여금감액개념으로 회계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반영하는 방법만으로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도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시행령에서 조문에 관계없이 모두 세무조정만으로서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확대규정하였다.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회계상 반영하면, 차변에 해당계정금액

에서 감액되어 차감순액표시되고, 대변의 잉여금계정금액에서도 감액되어 자기자본금액이 감소되므로 재무제표상 재무구조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반영하면 잉여금감액이 되지 않고 자기자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있다. 이러한 계정과목의 예로서 법인세법상 해당액을 보면

- 국고보조금취득자산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6조), 공사부담금취득자산의 손금산입(제37조), 보험차익취득자산의 손금산입(제38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제44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46조),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47조), 자산맞교환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50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재평가로 인해 90년 취득한 토지의 당초 장부원가 5억원, 재평가가시 10억원인 경우 재평가차익 5억원(=10억원-5억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된다.

- 재평가

(차) 토 지 5억원 (대) 재평가적립금 5억 : 세무상 익금산입사항임.

- 익금산입된 5억원에 대해 동액을 손금산입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익금산입 ⊖손금산입으로 당장의 세액부담은 없으나 손금산입사항이 ⊖유보되어 나중에 매각할 때 환입되므로 과세이연되는 개념임.

- 재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회계기록하면

(차) 압축기장충당금전입 5억원 (대) 압축기장충당금 5억원
(잉여금감액)

으로 토지의 대차대조표상 금액은 토지가액-압축기장충당금(10억원⊖5억원=5억원)으로 순액표시되며 자기자본계정에서도 자기자본 ⊖5억원(충당금전입)으로 감액되므로 외관상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없다.

- 그러나 재평가차익 손금산입을 회계표시하지 않으면 차변에 토지 5억원 증액, 대변의 자기자본계정에 재평가적립금 5억원 증액이 그대로 표시되므로 대외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